

'98. 공유재산취득및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11. 9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'98. 11. 9.

다. 상정일자 : '98. 11. 11.

(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천

나. 제안사유

- 화순군 보건소 신축부지를 매입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을 변경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보건소 신축부지용 취득 재산내역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취득면적	소요예산	취득시기
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19	719외 3필지	답	2,461㎡ (744평)	2,461㎡ (744평)	천원 670,007	98. 11월중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욕구도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음.
- 우리 화순군민에게도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,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키 위해 그 부지를 매입 취득 하고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안으로써
-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본 결과 교통상으로 편리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보건소 신축부지로서, 적당한 취득 물건이라 사료됨.

- 그러나 신축부지의 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축될 보건소가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되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'98 공유재산취득및관리계획변경승인안

'98 공유재산취득및관리계획변경승인안

의안 번호	98 - 89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'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함

2. 주요내용

○ 취득대상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 적	취득면적	소요예산
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19	719외 3필지	답	2,461 (744평)	2,461 (744평)	670,007

3. 취득사유

보건소 신축부지로 매입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.

'9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제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 득 제 산 소 유 자 주 소	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주 소	성 명	
계		4 필지	2,461m ²	670,007					
1	답	화순군 읍 삼천리 719	1,425m ²	387,956	*98. 11	보건소 이전 산죽 부지	화순읍 향정리 154-4	오 송	
2	"	삼천리 719-2	673m ²	183,224	"	"	"	오 송	
3	"	삼천리 612-2	292m ²	79,497	"	"	광주 북구 광항동 434 - 1	어평식	
4	"	삼천리 718-4	71m ²	19,330	"	"	화순읍 교리 200-1 유창하이니분면선 1107	이정신 외 1	